



제433회 국회(임시회)  
제1차 국토교통위원회

#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 미납 철도운임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 마련 〉  
■ 윤재옥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5804호)

2026. 4.

국 토 교 통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 오 세 일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□ 윤재옥의원 대표발의(2215804) .....                  | 1 |
| Ⅰ. 제안경위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Ⅲ. 검토의견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 |
| 1. 미납 철도운임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 마련(안 제10조의3 신설) ..... | 3 |

## □ 윤재옥의원 대표발의(2215804)

### 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윤재옥의원 등 10인
2. 제 안 일 : 2025. 12. 31.
3. 회 부 일 : 2026. 1. 2.

#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하철을 비롯한 열차 부정승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열차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가 운임 징수를 강제할 수 없음.

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음.

이에 운임·요금과 부가 운임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수납을 위탁하고, 수납을 위탁 받은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철도사업자가 철도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

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 
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3  
신설)

### Ⅲ. 검토의견

#### 1. 미납 철도운임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 마련(안 제10조의3 신설)

개정안은 운임·요금과 부가 운임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철도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, 철도공사가 철도사업자로 설정되어 있는 철도의 경우 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| 현행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신설> | <p>제10조의3(운임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) ① 철도사업자는 운임·요금과 부가 운임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운임·요금과 부가 운임의 수납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</p> |

| 현행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| <p>납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철도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철도공사가 철도사업자로 설정되어 있는 철도의 경우 그 운임·요금과 부가 운임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|

## 가. 검토의견

현행법 제10조1)에서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·요금을

### 1) 「철도사업법」

제10조(부가 운임의 징수)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·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철도사업자는 송하인(送荷人)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·중량·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

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<sup>2)</sup>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.

한국철도공사(이하 “철도공사”라 함)의 최근 4년간 운임 미납현황을 살펴보면, 미납건수는 총 2,347건이고, 미납금액은 4억 2,299만원이었음.

#### < 최근 4년간 한국철도공사 부정승차 운임 미납현황 >

(단위 : 건, 천원)

| 구분   | 2022년  | 2023년   | 2024년   | 2025년  | 합계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미납건수 | 653    | 561     | 563     | 570    | 2,347   |
| 미납금액 | 85,454 | 126,084 | 126,309 | 85,145 | 422,992 |

주. 일반철도와 광역철도를 포함한 금액임

자료 : 한국철도공사

그런데 현행법에는 징수 대상자가 운임 및 부가운임(이하 “운임 등”이라 함)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. 철도공사는 현재 운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철도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하여 경범죄<sup>3)</sup>로 처리하거나 민사소송을

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.

③ 철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,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.

2) 구체적인 부가운임 부과기준은 철도사업자가 자체규정을 통해 부과하고 있음.([참고 3])

#### 3) 「경범죄처벌법」

제3조(경범죄의 종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(科料)의 형으로 처벌한다.

제기하여 미납액을 회수하고 있으나, 경범죄로 처벌 시 미납액 회수가 어렵고,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및 시간 등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운임 등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 징수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철도의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.

참고로, 「유료도로법」에서도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등에 수납을 위탁하는 한편,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납된 운임을 국세 체납처분(강제징수)<sup>4)</sup>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개정안은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.<sup>5)</sup>

39. (무임승차 및 무전취식)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

4) 「국세징수법」 개정(2020.12.29.)을 통해 ‘체납처분’을 ‘강제징수’로 용어를 수정하였음.

5) 「유료도로법」

**제21조(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)**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. 16., 2020. 3. 24.>

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. 16.>

③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「한국도로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(고속국도만 해당한다)의 경우 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업무를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. 16.>

체계·자구에 관한 사항으로, 개정안 제10조의3제3항에서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, 징수의 주체를 ‘철도공사’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## 나. 국토교통부 의견

열차의 부정 이용을 근절하고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납된 부가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절차 마련에 동의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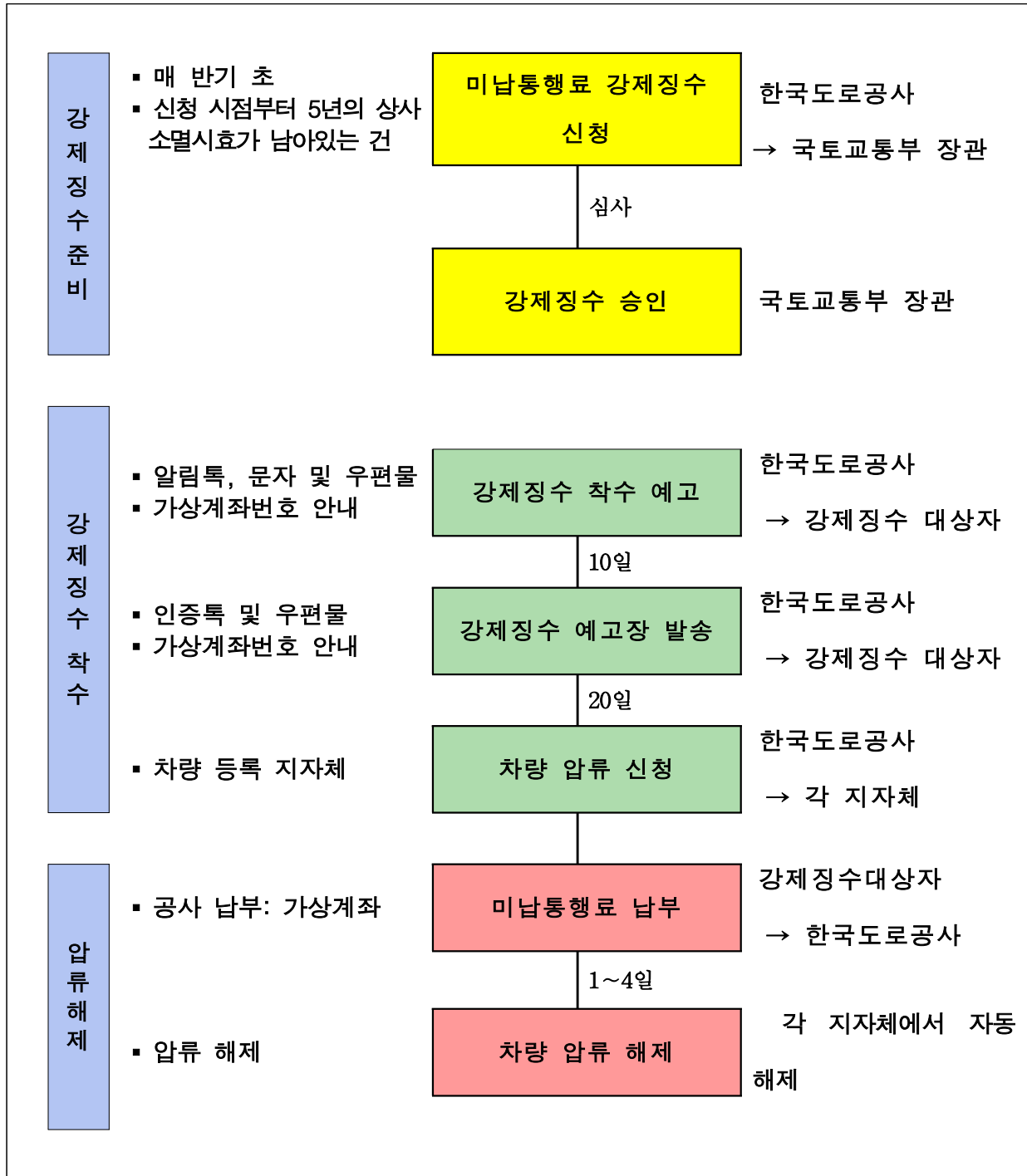
문 의 처

02)6788-5582

- 
- ⑥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내야 한다.

## 참고1

##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절차



## 참고2

## 철도사업면허 현황

| 연<br>번 | 면허연월일       | 상호<br>(법인명)       | 노선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구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<br>기간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      | 2013.12.27. | 주식회사<br>에스알       | 수서역을 기종점으로 하는<br>경부고속·호남고속선 하는<br>서울역을 기종점으로 하는<br>경부고속선 | 수서~부산,<br>수서~목포,<br>서울~부산          | 2016-<br>2046 |
| 2      | 2005.06.24. | 신분당선<br>주식회사      | 신분당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남역 ~<br>광교(차량기지)                  | 2011-<br>2041 |
| 3      | 2014.05.09. | 공항철도<br>주식회사      | 인천국제공항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울역 ~<br>인천공항2터미널역                 | 2011-<br>2041 |
| 4      | 2015.10.30. | 경기철도<br>주식회사      | 신분당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남역 ~<br>광교(차량기지)                  | 2016-<br>2046 |
| 5      | 2016.09.05. | 한국철도<br>공사        | 경강선(성남 ~ 여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기도 성남시<br>판교역 ~ 경기도<br>여주시 여주역    | 2016-<br>2035 |
| 6      | 2016.09.05. | 한국철도<br>공사        | 동해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산시 부산진구<br>부천역 ~ 부산시<br>기장군 일광역   | 2016-<br>2035 |
| 7      | 2022.03.10. | 서울교통<br>공사        | 진접선(당고개-진접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당고개역-진접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2-<br>2052 |
| 8      | 2022.05.10. | 새서울철<br>도<br>주식회사 | 신분당선(신사-강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사역-강남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2-<br>2052 |
| 9      | 2023.08.01. | 주식회사<br>에스알       | 경전선(수서-진주),<br>동해선(수서-포항),<br>전라선(수서-여수EXPO)             | 수서-진주, 수서-포항,<br>수서-여수EXPO         | 2023-<br>2053 |
| 10     | 2024.03.13. | 에스지레<br>일<br>주식회사 |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션<br>(수서~동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<br>수서역~경기도<br>화성시 동탄역    | 2024-<br>2054 |
| 11     | 2024.12.24. | 에스지레<br>일<br>주식회사 |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션<br>(운정~서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기도 파주시<br>운정중앙역~서울특별<br>시 용산구 서울역 | 2024-<br>2054 |

주. 2026.. 2월 기준

자료 : 국토교통부

## □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

제 12조(부가운임 등) ① 철도공사는 「철도사업법」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차구간의 기준운임·요금(승차한 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차한 열차의 처음 출발역부터 적용)과 그 기준운임의 30배 범위에서 해당 부가운임을 받습니다.

1.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: 1배
2.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: 2배
3. 이용 자격에 제한이 있는 할인승차권 또는 좌석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: 10배
4. 단체승차권을 부정사용한 경우: 10배
5.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: 10배
6. 승차권을 위·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: 30배